

● 제29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97

### I. 동의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이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 목적 및 목표

###### ○ 사업 목적

-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대한 지속적 대시민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건강관리 활성화로 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
- 보건소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 ○ 사업 목표

목 표	평가지표 (%)	현재 (2018)	2020년	2022년	자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뇌졸중 초기증상 인지율 증가(표준화율) 54.3</li> <li>-심근경색증 초기증상 인지율 증가(표준화율) 52.5</li> </ul> </li> <li>중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관리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30) 증가 93.2</li> <li>-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30) 증가 89.9</li> <li>-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30) 증가 40.4</li> <li>-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30) 증가 49.0</li> </ul> </li> </ul>	(2018)			61.0 55.0
		(2018)	94.0 90.0 41 50		지역사회 건강통계

- 장기목표: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 서울시민 중 고혈압·당뇨병 유병자의 합병증 예방
- 중기목표: 고혈압·당뇨병 관리수준 향상(치료율, 조절률, 교육이수율 등)
  -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건강형태 개선
  - 서울시민 중 고혈압·당뇨병 유병자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강화
- 단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인식률 증가
  -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 및 인식도 향상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전문강사 교수 능력개발 강화
- 중기 결과목표
  -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을 현재(2018) 93.2%에서 '20년 94.0%로 증가
  -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을 현재(2018) 89.9%에서 '20년 90.0%로 증가
    - ※ HP2020 목표인 고혈압치료율 64%, 당뇨병치료율 65%는 이미 초과달성
    - 2020년 목표는 2018년 현황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을 현재 40.4%에서 '20년 41.0%
  -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을 현재 48.9%에서 '20년 50%
    - ※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은 2019년 설정 2020 목표 초과달성하여 2018년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
    -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은 HP2020 목표로 설정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1.1.~2023.12.31.)

○ 위탁업무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
- 자치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
  -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보건소 연계사업 협력 및 지원
  -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 등
- 소요예산 : 69,412,000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일자	연혁
2008.8.1	민간위탁1차 협약(2008.8.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09.4.1.	민간위탁2차 협약(2009.4.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0.7.1.	민간위탁3차 협약(2010.7.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1.7.27.	민간위탁4차 협약 (2011.7.27.~ 2013.2.10.),강북 삼성 병원(2년)
2013.6.1.	민간위탁운영 5차 협약 (2013.6.1.~2014.12.31.)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2년)
2015.5.1.	민간위탁운영 6차 협약(2015.5.1.~ 018.4.3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18.5.1.	민간위탁운영 7차 협약(2018.5.1.~2020.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주요 위탁사

무는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개선 홍보사업, 고혈압·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구축,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서비스 질 강화,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민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맡기고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공개모집·선정을 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23조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개요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sup>1)</sup>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2)</sup>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시장이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
- 자치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
-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보건소 연계사업 협력 및 지원
-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 등

- 1) 제7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역

### 가. 민간위탁 추진현황

-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 사무의 위탁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7차 협약 기관인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모가 진행 될 예정임.

일자	연 혁
2008.8.1	민간위탁1차 협약(2008.8.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09.4.1.	민간위탁2차 협약(2009.4.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0.7.1.	민간위탁3차 협약(2010.7.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1.7.27.	민간위탁4차 협약 (2011.7.27.~ 2013.2.10.),강북 삼성 병원(2년)
2013.6.1.	민간위탁운영 5차 협약 (2013.6.1.~2014.12.31.)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2년)
2015.5.1.	민간위탁운영 6차 협약(2015.5.1.~ 018.4.3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18.5.1.	민간위탁운영 7차 협약(2018.5.1.~2020.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 최근 3년간의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지난 3년간 약 7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단장 1명과 팀장 1명 그리고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연도	예산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2018	68,449,300	68,400,324	48,976	100%	
2019	68,449,300	67,457,307	991,993	100%	
2020 (2분기)	69,412,000	22,208,571	47,203,429	31.9%	



## 나. 민간위탁 사무 수행 내역

- 동 사무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 및 인식도 향상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전문강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사업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대시민 홍보 사업 및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환자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른 사업의 성과로 매년 교육완료율 향상에 따라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육 이수율 및 지속치료율>

구 분		2016	2017	2018	자료원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서울시	86.8	86.5	93.2	지역건강 통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서울시	86.1	85.1	89.9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서울시		28.8	40.4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서울시		41.0	49.0	

자료: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질병관리본부, 2019.5)

- 동 사무에 대한 지난 위탁기간 동안의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내용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만, 본 민간위탁 사무의 가장 핵심인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및 표준교육 등의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사업 추진에 있어 점검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 됨.
  - 이외에 캠페인 수행 및 홍보물 개발,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의 단순 실적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사업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캠페인 수행 이후의 행동변화 및 교육수혜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 등을 사업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성과 >

단위사업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목표	달성	%	목표	달성	%
<b>&lt;필수사업&gt;</b>							
만성질환 예방·관리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서울시지원단지치구 합동캠페인 수행	참여 자치구 25	참여 자치구 25	100	참여 자치구 25	참여 자치구 25	100
	연령별 타겟 맞춤형 영상물4종 제작	4종	4종	100	-	-	-
	시민건강포인트 홍보시안 개발 활용	-	-	-	5종	5종	100
고혈압·당뇨병 발견 및 환자 관리수준 향상	보건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모니터링(명)	240,000	201,591	84	200,000	145,415	73
	자치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명)	연인원 100,000	연인원 89,765	89.7	연인원 100,000	연인원 109,069	109.1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조성	지역의사회와의 협력 강화	간담회 3회 이상	협약 체결	-	간담회 3회 이상	간담회 3회 실시	100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4회	4회	100	공동 협력 진행	공동 협력 진행	100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강화	보건소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90% ↑	107.8	100	개최율 1회 ↑	개최율 1회	100
	당뇨병환자 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3종 (질환, 영양, 운동)제작, 배부	3종	3종	100	3종	3종	100
	서울시 만성질환 전문강사 평가시스템 강 의실적 대비 평가율	-	-	-	50% ↑	68%	136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표준교육 완료수혜자 만족도 조사 (400명)	시행	시행	100	시행	시행	100
	서울시-지원단 운영회의	-	-	-	8회	4회	50
<b>&lt;선택사업(특화사업)&gt;</b>							
만성질환 고위험군 발견 및 관리	대사증후군 등록·관리 - 6개월/12개월 추구관리율(%)	50 /45	53.9 /47.3	107.8 /105.1	50 /45	57.2 /51.6	114.4 /114.7

효율적인 만성질환 등록관리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참여 의료기관	160	176	110	176	246	139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참여자치구	17	17	100	17	21	123.5

### 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sup>3)</sup>는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동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동 사무가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사무의 수행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업무로 보건의료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민건강국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보건을 중심으로 질환별 특성에 따른 사무 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사무의 통합을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3)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대상 업무 리스트>

사무명	예산(백만원)		(현)위탁기관	민간위탁 기간	주요업무	민간위탁 추진근거
	2019	2020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지원단	320	43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년 (’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사증후군 통합 관리모델 개발·구축 및 사업 프로세스 표준안 마련</li> <li>-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자치구 모니터링</li> <li>- 대사증후군 통합 DB 보완(안) 마련 및 실적취합·분석</li> <li>- 25개구 자치구 보건소 대상 심화전문교육</li> <li>- 대시민 홍보 수행 및 홍보시안 개발·배포</li> <li>- 지원단 운영을 통한 자치구 지원 등</li> </ul>	보건의료 기본법 제41조 <sup>4)</sup>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x35) 69	(x35) 6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3년 (’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li> <li>- 자치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지원</li> <li>-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li> <li>- 국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보건소 연계사업 협력 및 지원</li> <li>-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 등</li> </ul>	지역보건법 제30조 <sup>5)</sup>
서울시 통합건강 증진사업 지원단	(x343) 886	(x343) 93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년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li> <li>-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보건소 기술지원</li> </ul>	지역보건법 제30조

사무명	예산(백만원)		(현)위탁기관	민간위탁 기간	주요업무	민간위탁 추진근거
	2019	2020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술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인력 교육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x195) 390	(x195) 390	(사)한국천식 알레르기협회	3년 (’20~’22)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및 인증지원 -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등	보건의료 기본법 제41조
서울시 감염병관리 지원단	(x306) 613	(x359) 768	서울의료원	3년 (’19~’21)	- 서울시 감염병 동향과악 및 시민홍보를 위한 감시·분석 - 감염병 신속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 - 취약인구 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사업 - 보건소 및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 에 관한 법 률 제8 조6)

- 4)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5)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종합의견

-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교육 운영등의 사무에 있어 지난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가 있어 보이며,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확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본 민간위탁 사무를 비롯하여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사업 등의 통합을 통해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사무의 통합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